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5. 28. 선고 2013고단 769,2014고단13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모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춘 천 지 방 법 원 원 주 지 원

판 결

사건 2013고단769, 2014고단13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석·나희석(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폭행의 점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4. 16:4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신음을 울리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8. 12.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신음을 울리게 하거나 실제로 C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음향을 송신하는 등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함으로써 2013. 5. 15.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버33 보호처분결정을 6회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 20: 00경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제1항 기재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9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보호처분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938 등)에서 서로 원만하게 이혼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 1. 공소사실
-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4. 20:30경 원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체육관 옆 평상 앞에서, 피해자 G(41세)에게 피고인의 처 C과의 외도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새끼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4. 20:35경 위 체육관 옆에 있는 화단에서, 위 칼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화단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J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이런 회원도 보호해주내여~"라는 제목으로, "G 이 사람은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

들고 아닌 척 그것도 학교 선생이란 넘이 어떻게 이중인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저는 다니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그것도 못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고 저런 걸 선생이라고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불상하내 여 G 넌 인간쓰레기야 최소한 지켜야 할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나. 칼 소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고소장,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K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C의 법정진술과 녹취록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1) G은 이 사건 이후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C과 G 사이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소송 등을 제기하자 그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G과 C의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
- 2) G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하다가 칼을 겨누고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당시 칼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법원에서는 폭행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긴 팔 자켓을 입고 있었고, 그 안 쪽에서 신문지로 감싼 칼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칼을 신문지로 감쌌다는 사실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고, 목격자 K은 "당시 피고인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것같다"라고, 피고인의 처인 C은 "피고인이 자영업자여서 평소 편한 복장으로 다녔다"라고 이 법정에서 각중언하였으며, 여기에 사건 당시인 8. 중순경은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여름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긴팔 자켓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G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목격자의 증언이나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3) 나아가 K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고, C의 법정진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칼이 없어지면 내가 가져간 것으로 알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집에 있던 식칼 하나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것 같다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K, C의 진술로 피고인이 칼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4) 나아가 G이 2012. 8. 16.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협박죄, 폭행죄 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위각 죄는 형법 제 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춘천지방 법원 원주지원 2013가소63595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이고, 위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5.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

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